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3농)을 살리는**

##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세계의 식량 생산과 교역이 혼란으로 인한 식량위기, 그리고 일체의 생명 본원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생명의 위기 비롯하여 농업 자체의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현실. 농민·농업·농촌(3농)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이 더욱 절실함. 농업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기약할 주요한 분야임.
- 그렇기에 제대로 된 농정대전환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시민·농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고자 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가나다 순) 시민·농민단체는 22대 총선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음.
- 다양한 논의 끝에 시민·농민단체는 공동공약(25개 공약)을 정당들에 제시하여 공약화하도록 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릴 3농 실천 후보 공천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공동공약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책협약 체결을 포함하여, 22대 총선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가능한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농정을 개혁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임.

### 1. 기후위기 대응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업재해보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자원(경종-축산)순환 생태농업 확대

### 2. 식량주권 실현

- 농민기본법 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제도화
- 채소류 TRQ(저울관세할당) 수입 중단
-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 3. 먹거리 기본권 실현

-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농산물 확대
- GMO 완전 표시제, Non-GMO 표기 제도 도입
-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

### 4.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 농업진흥지역 보전 및 소유농지에 대한 보상
- 임차농 보호 :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 5. 농업 기반 강화

-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정 강화(농어업경영체법 개정)
- 농산물의 농가 생계비가격(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제정
- 농업노동력 확보 대책

## 6.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 7. 농촌·지역 소멸 대책

- 농민수당(기본소득) 법제화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공공의료 추진

## 1. 기후위기 극복

###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매년 2~3번씩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해 피해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
- 국가가 농가 평균 재배면적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모든 피해 농민에게 보상

### □ 농업재해보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대파비, 복구비뿐 아니라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보상
-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 등으로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 대폭 확대
- 보상 수준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개선으로 정책보험으로서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 □ 자원(경종-축산)순환 생태농업 확대

- 외부 투입재 최소화, 농업-사회-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지역단위(읍면 또는 시군단위) 경종-축산 생태 순환농업 추진
- 유기농가의 퇴비장 설치 지원
-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확대, 고품질 퇴액비 생산
- 퇴액비의 부숙도, 양분 등 점검 시스템 도입

## 2. 식량주권 실현

### □ 농민기본법 제정

- 다중위기(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업위기, 생명위기 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탈피
- 농민이 정책의 대상
- 농업에 대한 국가 및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농민기본법(농민·농촌·농업정책 기본법) 제정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법제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 및 실행계획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 국회 동의 등 책임성 강화
-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종합목표,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실현방안 제시
-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보전, 소득안정, 농업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 □ 채소류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중단

- 양파, 마늘, 대파 등 채소류의 무분별한 TRQ 수입 중단
- 물가지수 가중치가 각각 0.10%, 0.12%, 0.11%에 불과하여 물가안정에 큰 효과가 없음.

### □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약재배 추진으로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여 생산 및 가격안정 도모
- 채소류의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품목별 생산량의 약 5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 농협, 지자체 등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과 계약재배 알선

### 3. 먹거리 기본권 실현

#### □ 먹거리 기본법 제정

- 먹거리 기본법은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정책과 예산을 통합 추진하는 제도·정책·대책에 관하여 규정
- 국가 및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 마련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체계 마련
- 학교급식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농산물 확대

-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으로 확대 : 채소류(무, 양파, 마늘, 대파 등), 잡곡류(밀, 보리 옥수수 등)로 확대
-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 벌금 하한제, 부당이익금의 3배 부과제도 도입

#### □ GMO 완전 표시제, Non-GMO 표기 제도 도입

-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과 GM사료를 먹은 축산물까지 완전표시제 대상 확대
- 국민의 GMO 먹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모든 GM작물에 대한 정보 공개, 시험 재배되었던 GM작물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민관 공동실시 등

#### □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

- 유·초·중·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을 국가 사무로 전환
-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법률 제정 : 도시와 농촌 지자체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연계 협력을 지원

## 4.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 □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
-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마지막 보루로서 보전 정책 실현

### □ 농업진흥지역 보전 및 소유농지에 대한 보상

- 식량안보의 핵심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비농업용 전용의 예외없는 금지
- 비농민의 농업진흥지역 소유 금지와 농지 자경 실태에 대한 상시적 점검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의 자산가치에 대한 상대적 손해를 보상

### □ 임차농 보호 :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 임차농 비율이 절반 이상인 현실에서 임차농 보호와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 농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서면계약 의무화, 장기임대 계약 보장 등 임차농 보호, 음성화된 농지임대차 관행을 양성화, 임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농지 임대차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 등

## 5. 농업 기반 강화

### □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정 강화(농어업경영체법 개정)

-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90% 한도를 축소하여,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편법, 불법적 행위 근절
- 서울 등 대도시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목적 사업의 성실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 농산물의 농가 생계비가격(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대체작목 선택의 한계에 따른 일부 작목 수출현상(풍선효과)으로 가격변동이 극심, 농가경제의 불안정 심화
- 무분별한 TRQ 수입으로 농가 생계비 이하 가격 형성에 대한 대책으로 농산물의 농가 생계비가격 보장
- 중앙정부-지자체-농협-생산자의 협력과 역할분담

#### □ 필수 농자재 지원 법률제정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등으로 농약, 비료, 농업용 전기 및 유류, 비닐, 종자 등 농업에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
- 일부 지자체에서 조레 추진 사례가 있으나,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예산 지원
- 지원방식은 업체가 아닌,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

#### □ 농업노동력 확보 대책

- 중앙정부-지자체(광역-기초), 농민(농업인)단체, 농협, 인력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상설 ‘농업인력 전담기구’ 를 설치 운영하여, 내국인-외국인, 상시-계절 노동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 공공형 계절 근로자제도 전면 도입, ‘묻지마 단속’ 중단
- 농업노동력 관련 비자, 송출국과 협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에서 내국인-외국인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
- 단체 행동에 따른 각종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및 처벌 기준 마련

## 6.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 여성농업인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등 추진체계 내용을 명시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영주/공동경영주 구분 없이 농업종사자로 등록하도록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 □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 의무사항으로의 농촌형 성 평등 교육의 확대 및 강화
  - 농촌 지역의 성 평등 인식 향상과 성평등 교육 확대
  - 농촌형 성 평등 교육 강사단 육성 지원
  - 모든 농촌의 선출직(공직 지위)의 성 평등 교육 이수 의무화
  - 정책자금 수령 시 성 평등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 마을 규약(농촌여성조직 규약 포함) 개정으로 성 평등한 마을공동체 육성과 민주적 운영 방안 마련 및 마을개발위원의 남녀 동수 의무화
- 농촌 지역 성 평등 확산을 위한 현행 농업정책 및 제도 정비
  - 농업정책 관련 법안에서 농촌여성조직 명칭 등 성차별적인 용어 개정
  - 밤길 보행 등 안전한 생활기본권 보장과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 청년여성들의 안전한 공동거주 공간 마련, 토지확보 우선권 보장
  - 농업정책에 대한 성 평등 모니터링단 운영 의무화
  - 농협 이사·감사 및 대의원의 여성할당 의무제 강화

##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 여성으로 구성된 생산공동체 육성 지원, 소규모 농민가공지원 특례법 제정
- 각종 편이장비 보급사업을 모든 마을로 확대
- 여성농민의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각종 행사에서 무급으로 사용되는 여성농민의 노동력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의 가사, 간병 서비스 농촌 지역 할당제 마련
  - 취약농가 인력지원 서비스(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의 지원 금액 현실화
  - 마을단위 공동식당 운영지원
  - 교육·영농·가사 등 각종 헬프제도 확대 실시
  - 농촌지역 국공립 산부인과 설치,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농촌 지역 확대 및 할당제 마련

- 여성농민 질병의 공공의료 질 개선과 접근권 보장
  - 면단위 보건지소를 농부병 1차 예방기관으로 시스템화,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본사업으로 확대
- 농촌주민의 이동권 보장
  - 농촌지역 내 무상 공공버스 추진
  - 이동수단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7. 농촌·지역 소멸 대책

### □ 농민수당(기본소득) 법제화

- 농민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제정으로 국가 예산 지원
- 농가 단위가 아닌 각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 지역 균등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 읍면동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 폐로 지급

###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 농촌 서비스 취약 300개 읍면 거점에 생활복합센터 확충
- 공공임대주택, 혁신학교, 마을주치의, 사회적농업, 교육농장, 농촌유학, 일자리 등이 결합된 행복농촌 추진
- 휴식이 필요한 국민에게 치유농장·마을, 치유지구 제공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건강보험과 연계, 민간 건강관리 손해보험 상품화
- 농촌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정착 등을 일괄 지원하는 도농융합 상생마을 육성
- 농촌재생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체계 형성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농촌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 주체 육성

##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청년 인재(지역청년, 도시청년) 지역 활동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최소 3년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지역살리기, 주민의 생활지원, 기타 공적인 역할 등을 수행(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능성 모색+재능을 활용한 지역의 변화 경험)
- 3년 후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 활동 지원
  -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주거, 일자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및 행복택시, 청년공간 등
  - 청년 자립활동 지원 : 또래집단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지역 정착 청년+신규 유입 청년 등), 청년문화 활동 보장 지원 등

## □ 공공의료 추진

- 읍면단위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 공공의료 인력 육성 및 배치,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 진료과목 확대로 의료 공공서비스 확대, 농부병 전문 병원 운영
-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